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19호 소개

2013년 6월에 창간하여 격월로 발행되고 있는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가 이번 달로 제19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헌법판례동향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로 소개된 '동의 없는 정신병원으로의 강제입원과 신체의 자유' 사건은 자신의 동의 없이 배우자나 가족의 동의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는 경우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배우자나 가족의 동의가 강제입원자의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강제입원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결함이 있다면 유럽인권협약상 신체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문제가 되어 2016. 4. 14. 헌법재판소에서 변론(2014헌가9 사건)이 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법상 연방의회 내 소수정당 권한의 한계' 사건은 의회 내 소수당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제권의 한계에 관한 사건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먼저 기본법이 '효율적인 야당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소수당의 권리(연방의회 의원 4분의 1 동의에 의한 조사위원회 설치, 추상적 규범통제심판 청구 등)를 넘어서는 소수당의 특별한 권한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판례로 소개된 '단기로 규정된 망명신청사건 이의제기 기한의 위헌성' 사건은 망명신청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을 일주일로 규정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망명신청국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점, 사실관계의 확인 및 증거제출의 어려움, 어려운 법리문제 해명의 필요성 등 망명신청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난민 및 망명신청과 관련하여,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18호에 소개되었던 유럽인권재판소의 '망명신청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피신청국의 절차적, 실체적 의무' 사건, 뉴스레터 제10호에 실렸던 오스트리아의 '동성애자 망명신청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 뉴스레터 제4호에 실렸던 스위스의 '난민의 혼인할 권리에 관한 결정', 뉴스레터 제3호에 실렸던 오스트리아의 '장애인 난민의 귀화신청' 사건, 뉴스레터 제2호에 실렸던 독일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보호급부규정의 위헌성' 사건과 같이 보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뉴스레터 지난호는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http://ri.ccourt.go.kr/cckri/cri/main.do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 사건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하여 정치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그러나 그 공무원은 실제로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실의 착오에 의한 강등)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무원이 헌법상 보장된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같은 종류와 강도의 헌법적 손해를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캐나다의 '국세청의 정보요구와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유지특권' 사건은 국세청이 세금징수와 회계감사를 위해 변호사에게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먼저 의뢰인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프라이버시의 기대를 가진다고 하면서 국세청의 요구는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불합리한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랑스 판례로 소개된 '예심수사피의자의 전화통화 및 면회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은 이러한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및 불복절차의 부재가 문제된 사건이며, '직업활동의 성격에 따른 장애연금 차별지급의 위헌성' 사건은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근로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장애연금 지급에 있어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할 권리에 관한 재판소원' 사건은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치료방법의 선택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연구 중인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할 권리(right to try)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며, 일본의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감독책임과 책임무능력자의 보호' 사건은 치매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우자나 가족들의 감독의무 및 책임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유럽의 룩셈부르크 헌법재판소와 아프리카의 카메룬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1990년대 중반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는데, 그 시절은 소련에서 독립한 많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하여 유럽평의회, 특히 베니스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럽의 보편적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설립을 권고하였고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이 시기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급속히 활성화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 세계헌법재판 관련 법령

지난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18호 소개말에서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번호에서는 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규'와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에 있어서 재판지원 계속성에 관한 2010년 2월

16일 데크레 제2010-149호'를 실었습니다. 지난호에 실렸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무에 관한 1959년 11월 13일 데크레'와 '헌법재판소 사무처 조직에 관한 1959년 11월 13일 데크레'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16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동향을 모아 놓았습니다. 링크를 연결하시면 해당 기사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미국통신원 소식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치화와 대법관의 종신임기제(Life-Tenure)'와 일본통신원 소식으로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점'을 실었습니다.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가 더욱 풍부하고 신속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를 발행하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 김성진